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40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5.
3. 회부연월일 : 2025. 1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2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3(자료의 요청) ①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및 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적사항</u> <u>2.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 정보</u> <u>3.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u> <u>②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공 요청 범위와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법 제12조¹⁾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로 하여금 일반용전기설비²⁾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동 법 제14조³⁾는 공동주택 세대와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일반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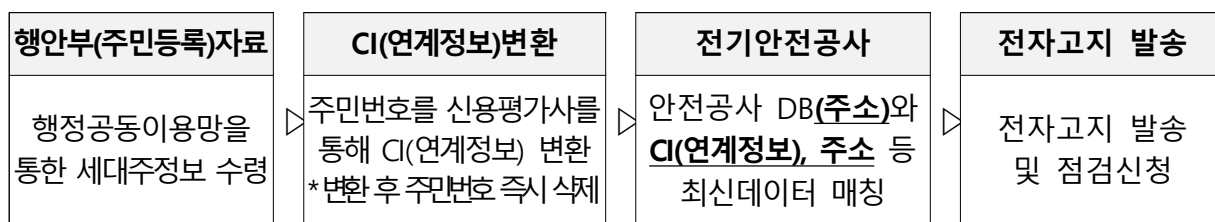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하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주거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세대주” 정보를 제공받아 정기점검 시기에 맞춰 사전에 전자고지로 안내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⁵⁾, 비주거시설의 경우 자료 요청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고지를 통한 사전 안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주거시설 전자고지 활용 절차 >



전기안전점검의 경우 차단기 동작 확인을 위한 정전이 수반되는데, 사전 안내 없이 음식점이나 점포 등 비주거시설을 불시에 방문하여

3)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 5)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세대주 정보 약 2,600만건을 매월 제공받아 정기점검 시기에 맞춰 주택 등 시설 소유자·점유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음.

점검하는 방식은 영업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점검 거부 또는 재 방문 요구 등 점검기관과 수검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나아가 전기안전점검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⁶⁾

이에 개정안은 안전공사가 비주거시설 등의 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업종 등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은⁷⁾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6)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기점검 관련 민원 중 사전안내 부족 민원이 전체의 5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고객응대(17.7%), 전산장애(11.3%), 설비고장(8.1%) 순임.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⑤ (생략)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기안전점검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의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의 제도로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 사전 안내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게 되면 수검자의 수용성 제고를 통해 전기안전점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안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인적사항,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정보,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하위법령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⁸⁾⁹⁾

또한, 안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자정보”의 경우, 구체적으로 요청하려는 정보의 내용이 모호하므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 변경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¹⁰⁾

8) 예를 들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내용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우편주소로 각 호에 열거하고 있음.

9)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국세기본법」에 따른 사업주의 성명, 상호, 업종, 업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등기정보의 소유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점검 안내·결과통지 등을 통해 동 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기반으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